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요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054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조정(인요한의원안, 최은석 의원안)	2

I. 개요

1. 인요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05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인요한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9. 19.
- (3) 회 부 일 : 2024. 9.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 합계액 100만원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각종 위험을 분담하는 민간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노후 의료비 등 국가가 미처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합계액 한도인 100만원은 2014년 현행법 개정 당시 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이에 경제활동시기에 노후의료비 부담을 미리 대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료 합계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조정(인요한의원안, 최은석의원안)

현 행	인요한의원안, 최은석의원안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제1항) ○ 적용대상: 근로소득자가 보장성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아래 보험료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상해·손해보험 및 각종 공제의 보험료·공제료 ○ 적용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u>100만원</u> - 기타 일반 보장성보험료: <u>100만원</u> ○ 공제율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5% - 기타 일반 보장성보험료: 12%	☐ <u>보험료 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u> ○ 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 적용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u>200만원(인요한의원안)</u> <u>150만원(최은석의원안)</u> - 기타 일반 보장성보험료: <u>200만원(인요한의원안)</u> <u>150만원(최은석의원안)</u> ○ 공제율 (현행과 같음)

* 인요한의원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4054), 최은석의원안 2024. 10. 31. 제출(의안번호 5147)

☐ 2건의 개정안은 보험료 특별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인요한의원안) 또는 150만원(최은석의원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¹⁾는 노동력 유지와 소득창출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적 성격이 있는 보험료 지출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및 그 외의 일반 보장성보험료²⁾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12%~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먼저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4년 「소득세법」 전부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연 5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하였고, 1999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연 7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공제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2003년부터는 일반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7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에는 보험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2015년 5월에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2) 사망·상해·입원·생존 등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소액의 보험료를 거두어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중도해약이나 만기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음. 반면에 저축성보험은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은 특징이 있음.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연혁 및 현행·개정안 비교]

구 분		1994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14년	2015년	개정안
일 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 형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납입 한도	50만원	70만원		<u>100만원</u>			<u>200만원</u> (인요한의원안) <u>150만원</u> (최은석의원안)
	공제율	-				12%		
장 애 인 전 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 형태	-	소득공제		세액공제			
	납입 한도	-	<u>100만원</u>			<u>200만원</u> (인요한의원안) <u>150만원</u> (최은석의원안)		
	공제율	-				1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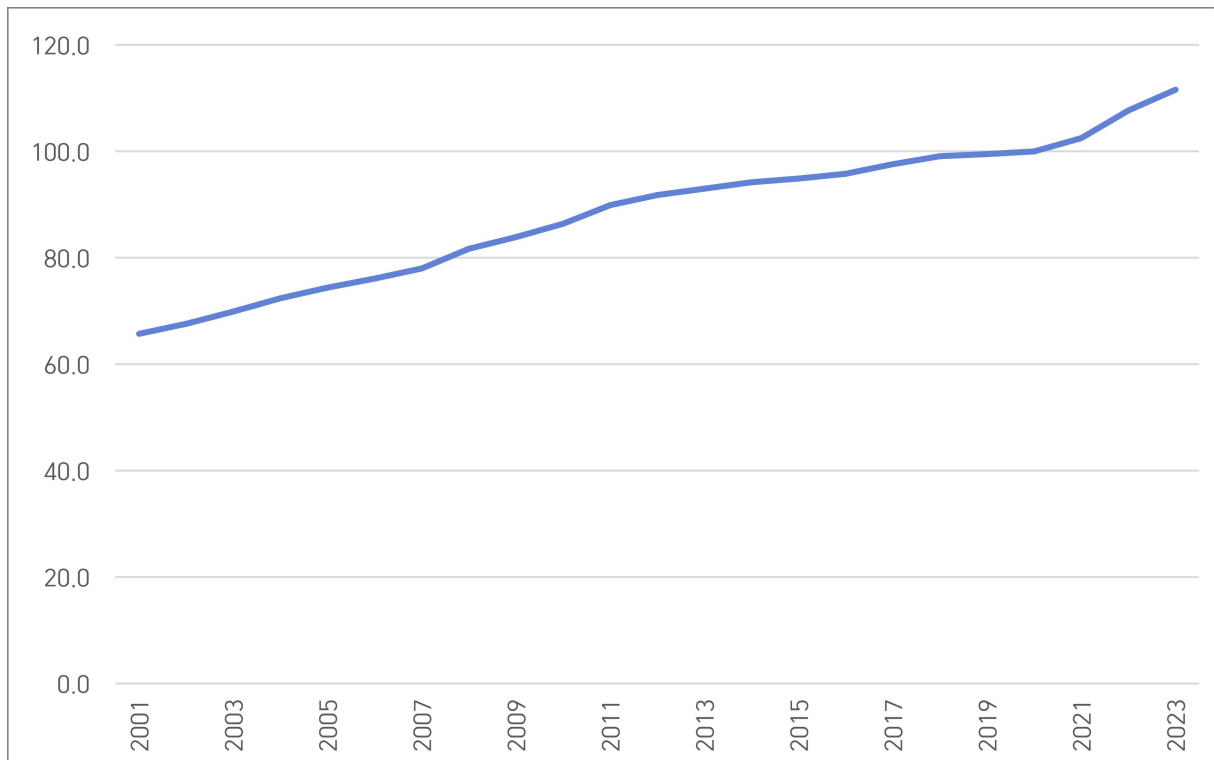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2001년 공제 신설 이후 현재까지 공제한도의 조정 없이 계속 100만원이 적용되고 있고, 일반 보장성 보험은 2003년 공제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 이후 계속해서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2001년 65.7에서 2023년 111.6으로 약 69.9%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조세특례 공제한도액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³⁾.

[2003년~2022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기준: 2020년=100)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

둘째,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험 가입의 유인을 증대시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각종 위험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민간 차원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주택 화재, 자동차 사고, 의료비 지출 등 국가가 미처 보장하지 못

3) 이에 자동차보험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보장성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촉진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 차원의 보상을 활성화함으로써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액이 상향조정되면 보장성 보험 등 관련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가입유인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근로자 가구의 연 평균 보험료 지출액이 보험료 특별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구의 연 평균 보험료 지출액⁴⁾은 2019년 100만원을 초과하여 2023년 약 107만원 수준으로 현행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한도액인 10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단위: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가계지출		3,809,653	3,687,877	3,855,719	4,032,060	4,318,123
	소비지출	2,740,086	2,646,063	2,753,779	2,862,941	3,061,791
	기타상품 서비스	228,797	220,826	226,214	227,844	236,168
	보험료 지출액	92,269	95,816	98,637	94,449	89,524
	(연간 지출액)	1,107,228	1,149,792	1,183,644	1,133,388	1,074,288

* 자료: 「가계동향조사」,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4) 다만, 「가계동향조사」의 보험료는 보장성보험뿐만 아니라 저축성보험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구체적으로 종신보험, 저축성보험인 연금보험, 화재보험 및 운송 관련 보험 등 기타보험(손실보상을 위한 보험), 건강관련보험(사망보험, 상해 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 실비보험) 등이 이에 포함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조세특례 공제한도 상향조정의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될 우려가 있어 보임.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보험료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23년 기준 1분위·2분위 근로자가구의 경우 연 평균 보험료 지출액이 현행 공제한도인 100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공제한도 인상에 따른 세제혜택이 추가 납입할 유인과 여력이 있는 3분위 이상의 고소득층에 집중될 우려가 있어 보임.

또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더라도 2022년 기준 33.6%에 해당하는 면세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소득 5분위별 근로자가구당 가계수지 중 보험료 지출액 규모]

(단위: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월간)	(월간)	(월간)	(월간)	(월간)	(연간)
전체평균	92,269	95,816	98,637	94,449	89,524	1,074,288
1분위	29,888	33,588	40,035	40,426	36,605	439,260
2분위	67,000	66,339	70,343	64,084	61,938	743,256
3분위	93,645	96,718	97,620	93,749	91,001	1,092,012
4분위	120,779	123,029	121,499	119,355	113,559	1,362,708
5분위	149,949	159,330	163,632	154,592	144,414	1,732,968

*자료: 「가계동향조사」,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둘째, 공제한도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2017년 1조원을 돌파하였고 2022년 조세지출 규모는 1조 3,158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공제한도를 100만원 또는 50만원 추가상향할 경우 조세지출액이 상당한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6년~2022년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실적]

(단위: 만명,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적용인원	869	922	982	1,054	1,095	1,149	1,201
조세지출 실적	9,559	10,131	10,681	11,484	11,918	12,589	13,158

*자료: 국세통계연보

□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⁵⁾를 합한 조세지출 규모는 2023년 6조 3,083억원에 달하였고, 공제대상 근로자 수 및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2024년 6조 9,673억원, 2025년 7조 5,095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0년~2025년 보험료 세제지원 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국세감면액	43,630	47,542	54,607	63,083	69,673	75,095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5)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1항)

문 의 처

02)6788-5154
